

현·장·조·사
안전매뉴얼



2021. 12.



통계청도서관



B00126414





Contents

I 안전과 사고의 이해	1
II 안전한 통계조사를 위한 기본 사항	2
III 안전사고 유형별 예방법 및 대처요령	4
IV 조사 대상처에서의 안전수칙	8
V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조치	12
VI 현장조사 직원 보험 가입	13
VII 안전사고 관련 재해보상 처리절차	14
VIII 기타 안전관련 정보	19
〈참고〉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내('22. 1.27. 예정)	29
2. 경찰서 업무 협조 공문 예시	30



I

안전과 사고의 이해

1

안전의 개념

➔ 사전적 의미

- ⦿ 위험하지 않은 것, 마음이 편안하고 몸이 온전한 상태

➔ 일반적 의미

- ⦿ 사고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인간의 행동을 수정하거나 물리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 조건이나 상태

2

사고의 개념과 원인

➔ 사고의 개념

- ⦿ 일반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안전하게 형성된 습관과 행동으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한 손해'를 뜻함

➔ 사고의 원인

- ⦿ (인적 요인) 연령, 성별 특성, 태도 및 심리적인 상태, 행동특성 등
- ⦿ (물적 요인) 비행기 엔진 고장, 자동차 기계적 결함 등
- ⦿ (환경적 요인) 도로 사정, 날씨 등

88%
인적 요인

10%
물적 요인

2%
환경적 요인

※ 출처 : 하인리히의 법칙

II

안전한 통계조사를 위한 기본 사항

1

안전용품 및 조사용품 준비

- ➔ 조사 전 안전한 조사수행을 위해 안전용품 및 조사용품을 철저히 준비

2

담당조사구 확인

- ➔ 조사구의 지형, 주택 배치 형태, 개 사육 여부, 교통량, 경찰지구대, 파출소 등을 확인

3

방문위험지역 사전 파악

- ➔ 시골지역의 경우
 - ▶ 이장을 통해 마을에서 동떨어진 가구(가축농장, 개 사육장 등) 등 위험우려 지역 사전 파악
 - ▶ 가급적 야간조사를 피하고, 부득이 야간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이장이나 마을 자유투쟁대 등의 도움을 받아 동행하여 조사 실시
- ➔ 도시지역의 경우
 - ▶ 경찰지구대나 파출소를 통해 범죄 발생 및 우려지역 등을 미리 확인, 특히 이웃 주민들과 교류가 없는 독거 가구는 반드시 동행하여 조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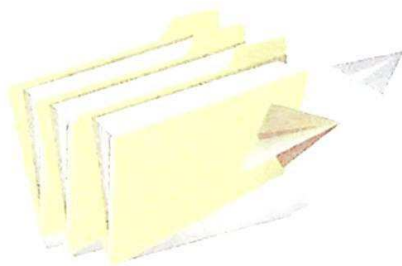
- ③ 필요한 경우, 조사 당일 방문 일정을 가족 및 지인 등에게 알림
 -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알리고, 야간조사 시에는 당직자에게도 사전에 일정을 알림

4 비상연락처 확보

- ③ 조사 중 긴급 상황 발생 시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연락처 (사무실, 인근 경찰지구대, 파출소 등) 메모, 필요시 즉시 연락
- ③ 개인 휴대폰에 비상연락처 입력

5 조사관련 서류가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

- ③ 조사관련 서류(조사표, 가구명부, 필수품 등)를 분실하지 않도록 항상 휴대하고, 특히 조사 완료된 조사표는 주의를 기울임(날치기 주의)



III

안전사고 유형별 예방법 및 대처요령

1

교통사고

- ① 몸에 맞지 않는 자전거는 피하고, 우천 시에는 자전거 및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지 않음
- ② 차량 이용 시 교통사고가 많은 교차로나 좁은 골목에 유의하고, 야간 및 우천 시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운전을 하도록 함
- ③ 좁고 불규칙한 농로 대신 안전한 길로 우회
- ④ 저녁 및 야간조사는 특별히 주의
 - ⊙ 부득이 야간조사를 하게 될 경우 어두운 색의 복장은 피하고 눈에 잘 띄는 밝은 색의 복장 착용
- ⑤ 교통사고 발생시 '비상등으로 주변에 사고발생을 알려 2차 사고 방지 → 사고현장 및 자동차 파손부위 사진촬영 → 보험회사에 연락 → 사고발생 상황 소속기관에 알림' 으로 조치
 - ※ 인명피해 발생 시 즉시 119에 구호 요청, 사고유발차량 도주 등의 상황 발생시 112에 신고

2

넘어짐

- ① 도로의 높낮이, 구덩이, 하수구 등에 주의
- ② 급한 경우에도 계단을 오르내릴 때 주의하며, 비가 올 때나 야간에 미끄러져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

- ④ 계단이 많은 지역이나 비오는 날은 바닥이 미끄러운 재질의 신발 착용을 피하여 계단에서 넘어짐 예방
- ④ 야간조사 시 휴대용 조명기구 등을 이용하여 시야 확보
- ④ 출혈 시 수건이나 얇은 천으로 압박 지혈 후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유지한 채로 주변이나 119에 도움을 요청

3

성추행·성폭력 및 폭행 등

- ④ 상대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상대의 동작에 주의
 - ① 면접조사를 할 때에는 응답자와 일정한 간격 유지
 - ① 면접 중에 상대방의 태도 또는 동작을 잘 살펴 이상한 행동을 할 경우 등에는 조사를 중단하고 돌아와 소속 팀장, 과(소)장에게 보고
- ④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
 - ① 조사 시에는 분명한 말로 조사를 진행하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말과 행동은 삼가
 - ① 문이 열린 상태에서 잠시 외출 중인 집에 들어가 도난 등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
- ④ 불안감을 느낄 때에는 되돌아 가도록 함
 - ① 정신 이상자, 혹은 술에 취해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면접 도중 불안감을 느낄 때에는 즉시 조사를 중단하고 되돌아 가도록 함
- ④ 성추행, 성폭력, 폭행 위험 발생 시 대처요령
 - ① 1.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등 큰 소리를 여러 번 외치고, 안전용품으로 지급된 호신용 경보기(또는 SOC단말기) 등을 사용하여 주변에 위험 발생 상황 알림



2. 위험 지속 시 호신용 스프레이 사용 등을 통해 위험지역에서 빠져나온 후, 즉시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사무실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 (상황에 따라 '112긴급신고 앱' 또는 '원터치 SOS'* 사용)

* 'VII. 기타 안전관련 정보 - 2. 앱 신고' 참고

※ 호신용 경보기, SOC 단말기, 스프레이 등은 사전에 사용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목에 걸거나 가방 고리에 연결하는 등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

4

개물림

- ➔ 개를 기르는지, 개가 줄에 연결되어 있는지, 개 줄의 길이 등을 확인
 - ⊙ 개를 기르고 있는 곳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벨을 누르거나 문을 열 때에도 주의함
- ➔ 불필요하게 개를 만지는 행위 삼가
 - ⊙ 실내에서 주인과 함께 있어도 머리를 쓰다듬거나 안아주는 등 불필요한 접촉은 삼가야 함
- ➔ 주인에게 연락을 취해 위기상황 모면
 - ⊙ 현관 밖의 개가 심하게 짖거나 달려들려는 경우 주인에게 연락한 후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 주인의 도움을 받아야 함
 - ⊙ 목줄이 없거나, 보호자 부재 시 견종을 불문하고 방문 자제
- ➔ 달려드는 개 대처 방안
 - ⊙ 달려드는 개는 마주서서 물건을 근처로 던지거나 윗옷을 벗어 관심을 다른 곳으로 유인하고 뛰지 않고 걸어서 회피할 것
 - * 뒤돌아서 등을 보이고 도망가면 사냥감으로 인식하여 바로 덫침
- ➔ 반려견에게 물렸을 경우 대처요령
 - ⊙ 소리쳐서 주위의 도움을 구하며 본능적으로 팔을 급하게 빼지 않아야 하며,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을 받아야 함

5

감염병

① 감염병 발생 시 효과적 대응 및 추가 확산 차단

- ② 발생 초기에 상황파악 후 보건소 등 자진신고 및 해당 부서 소속 팀장, 과(소)장에게 즉시 보고
- ③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기관(질병관리청, 보건소 등)에 방역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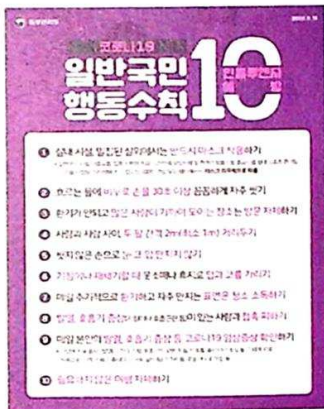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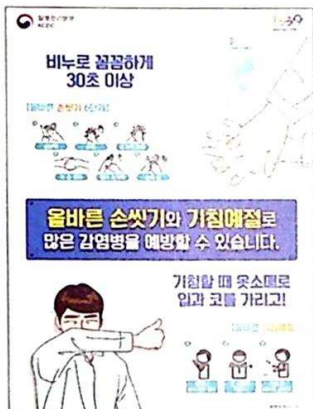
② 보건당국의 지침을 준수하여 현장조사 직원 안전 및 조사대상처 확산 방지

- ③ 감염병 발생 지역 출장 자제, 특히 의심 증상 있는 직원은 사무실 출근 및 응답자 방문 자제
 - 조금이라도 감염병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퇴근하여 집에 머무르면서 필요 시 보건당국의 검사 실시

③ 감염병 질병 정보, 개인 위생수칙 · 행동요령 등 예방교육 주기적 실시

※ 행동수칙 등 세부 지침은 감염병 전문기관(질병관리청) 또는 우리청 지침에 따를 것

♣ 감염병 예방수칙(예시 :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 등)



IV

조사 대상처에서의 안전수칙

1

가구 방문 시 안전수칙

㉠ 가구방문은 가능한 한 낮 시간에 완료

- ㉡ 부재가구의 경우 조사 방문통지서나 이웃 주민 등을 통해 조사 가능 시간을 파악하고, 가급적 낮 시간대에 방문
- ㉢ 부득이 야간에 방문해야 할 경우 어두운 도로나 인적이 드문 길을 피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2인 1조 동행 출장 실시



㉡ 조사는 현관에서 실시

- ㉢ 부득이 집안으로 들어갈 경우, 방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고 현관문을 열어둔 채 조사를 마칩

㉢ 공무원증 · 공무직원증 또는 통계조사원증 제시

- ㉣ 먼저 공무원증 · 공무직원증 또는 통계조사원증을 제시하여 통계청 현장 조사원임을 명확히 전달

㉣ 적절한 방문 시간 선택

- ㉣ 너무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에 방문하여 가구에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하고, 상가지역 가구를 방문할 때는 혼잡한 시간을 피함
- ㉤ 부득이 전화를 할 경우에도 적절한 시간을 선택

③ 예의바른 태도를 갖추

- ① 고압적인 말투, 음주 후 방문, 정치·종교 등에 대한 불필요한 대화는 피하도록 함
- ② 응답자의 언행이 다소 불쾌하더라도 화내거나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도록 함

④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조사 시 관리인에게 알림

- ① 관리사무소의 안내방송 협조 요청을 통해 통계청 현장조사 직원이 방문하게 됨을 알림

⑤ 조사 수행 중 영업행위나 종교 활동 금지

- ① 조사 수행 이외의 방문판매 행위나 종교활동, 사회단체활동 등을 하여 응답자에게 거부감을 주어서는 절대 안됨

2

사업체 방문 시 안전수칙

① 안전한 장소에서 조사

- ① 공장이나 작업장 등에는 가동 중인 기계, 쌓아올린 자재, 위험한 약품류 등이 있으므로 피함

② 적절한 방문 시간 선택

- ① 방문하는 사업체가 혼잡한 시간을 미리 파악하여 피하도록 하고, 개점 전 등 비교적 한가한 시간에 방문



3

농·어업 관련 대상처(조사구) 방문 시 안전수칙

- ① 벌에 쏘이거나 벌레·뱀 등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
 - ② 긴 소매 옷을 착용하고, 화려한 색의 옷보다는 어두운 계열의 옷을 착용
 - ③ 장화, 작업화, 모자, 장갑 등을 착용하여 신체노출 최소화
 - ④ 향수나 스프레이와 같은 향이 강한 화장품은 사용하지 않음
- ② 농가의 경지면적 확인 시 야생동물 퇴치를 위해 설치된 덫이나 전기 울타리 등에 주의
 - ③ 고압주의 표지판 등을 미리 확인하여 사고 예방
- ③ 좁은 농로, 논·밭두렁으로 도보 이동 시 음푹 패인 구덩이 등에서 헛디딤 등 낙상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④ 표본조사구 방문 등 야외에서 조사업무 수행 시 기상상태 확인
 - ⑤ 출장 수행 전 해당 지역의 기상을 확인하여 폭우 및 폭설 시 현장방문 일정 조정
 - ⑥ 폭염 주의보가 발령되면 가급적 무더운 시간을 피하며 장시간 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 ⑤ 농작물생산비조사 기계 장비 및 도구 안전사고 최소화(탈곡기 등 장비)
 - ⑦ 장비 및 도구의 사전조작법 숙지 및 경력자 우선 시범
 - ⑧ 도구 사용시 각반, 장갑 등의 보호장비 착용으로 사고 예방
- ⑥ 어선에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
 - ⑨ 어선을 이용하여 양식장 등 대상처 방문 시 구멍조끼를 착용하고 자리에 앉아 안전하게 이동



4

안전 확보가 필요한 대상처에 대한 단계별 안전대책

➔ (1단계) 면접조사를 비대면조사로 대체

- ⦿ (대체사유) 대상처 방문으로 조사직원 안전에 위협을 받을 경우
- ⦿ (대체절차) 소속 부서장 서면보고 및 결재 후 조사담당 실사과에 통보

➔ (2단계) 표본 대상처 교체

- ⦿ (교체사유) 안전 확보가 필요한 대상처에 대해 비대면조사가 가능하지 않을 경우 등
- ⦿ (교체절차) 공문 또는 메모보고로 표본과에 교체 요청

➔ (3단계) 2인 1조 동행 출장

- ⦿ (전제조건) 안전 확보가 필요하나 비대면조사 또는 표본교체가 불가능한 대상처에 대해 부득이 현장조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
 - ▶ 2인 1조 동행 출장 시 업무량 증가 등으로 인한 직원 부담을 고려하여 실시
- ⦿ (운영방법) 2인 1조 동행 출장이 필요할 경우, 각 지방청(사무소)별 예산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
 - ▶ 범죄 발생 가능성이 현저한 고위험 조사대상처를 방문할 경우 반드시 경찰관이나 남자 직원과 2인 1조로 동행 출장
 - ▶ 지방청(사무소)에서는 경찰관의 원활한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와 사전에 협의 필요

* 경찰서 업무 협조 공문(예시), 30쪽 참고

V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조치

♣ 안전사고 처리절차

- ① 사고나 부상 시에는 즉시, 사고수습에 필요한 응급 조치(119, 112, 보험 회사 등에 연락) 실시
- ② 사고 발생 상황(일시, 장소, 부상정도 등)을 본인 소속기관(지방청·사무소)에 신속하게 보고
 - ※ 사고 및 부상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 및 조치



안전사고발생
(사고, 부상, 질병 등)



응급조치
(119, 112, 보험회사 연락)



상황보고
(소속기관 : 지방청·사무소)



재해보상처리 신청
(보험금, 재해보상금여, 산재보상 등)

VI

현장조사 직원 보험 가입

1

공무원 및 공무원직

- ➔ 가입보험종류 :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추진하는 맞춤형복지 단체보험
 - 단체보험가입이 결정된 상품은 전 직원 필수 가입
 - 단, 본인입원의료비, 본인통원의료비, 가족(배우자, 자녀) 입원의료비는 실손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면제 가능
- ➔ 가입대상자 : 공무원 및 공무원직,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2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 ➔ 가입보험종류
 -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 ➔ 가입대상자 : 공무직 및 연간·특별조사 총관리자, 조사관리자, 업무보조원 등

3

도급계약 조사원

- ➔ 가입보험종류 : 일반 상해보험 또는 산재보험 등 1인 1보험 의무가입
- ➔ 가입대상자 : 도급계약 조사원
 - 도급계약으로 수급자(조사원) 부담으로 계약체결, 계약기간 동안 기존 보험사에 가입(담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가입 불필요

VII

안전사고 관련 재해보상 처리절차

1 공무원

- 재해보상급여 :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질병·부상·장애·사망하였을 때 국가가 보상적인 차원에서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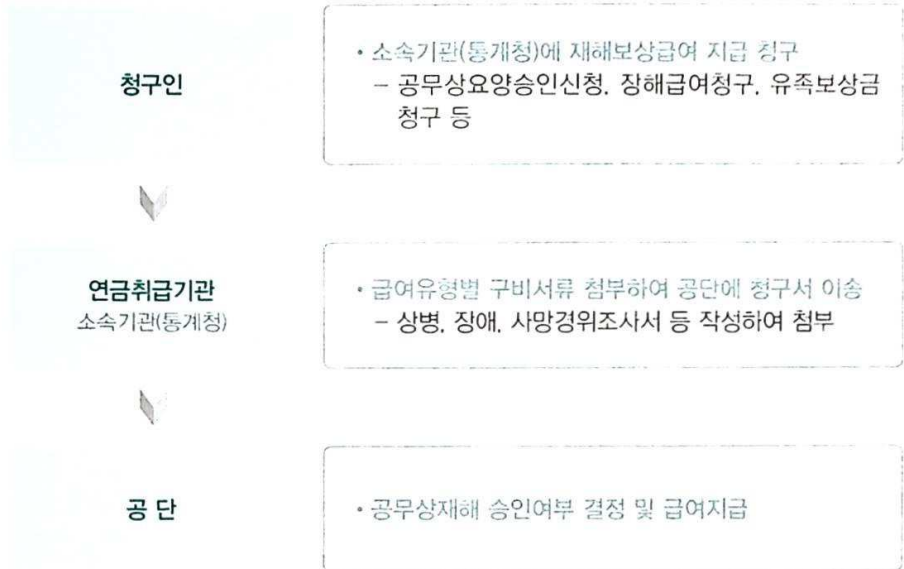


공무원연금공단 재해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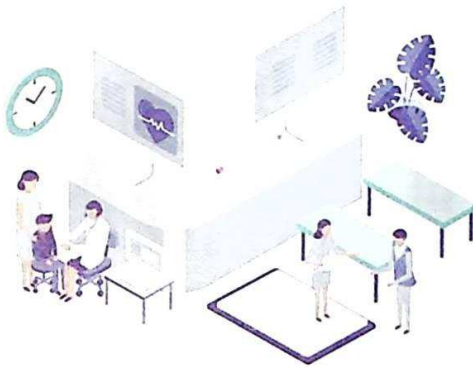
- 재해보상 처리기관 : 공무원연금공단

부상·질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상 요양비 - 실제 요양기간 범위 내 지급
장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해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장애확정 및 퇴직시 장해등급(1~14급)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52%~9.75% 장해일시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해연금액의 5년분 일시지급 ※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중 본인이 선택하여야 하며, 퇴직급여와 병급 가능
사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순직유족보상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사망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 지급 순직유족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사망시, 사망 당시(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 기준소득월액×(38% + 유족 1인당 5% 가산(최대 20%)) ※ 순직유족보상금, 순직유족연금 중 선택 사망조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조적 차원으로 지급하는 급여 급여시유 발생일(3년)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3년이 경과하면 소멸 ※ 순직유족보상금이나 순직유족연금과 병급 가능

㉠ 세부 처리절차



※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알기 쉬운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참고





2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연간·특별조사 총관리자, 조사관리자, 업무보조원 등)

㉠ 산업재해 :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의미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 산재보상 처리기관 : 근로복지공단

㉢ 세부 처리절차

- ㉠ (1단계) 재해 당사자는 '공단이 설치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병원, 사업장(지방청·사무소)에 각각 제출
- ㉡ (2단계)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여부를 확인하여 7일 이내에 요양승인여부를 재해 당사자와 사업주, 병원에 각각 통지하게 됨
- ㉢ (3단계) 업무상 재해 승인이 확정되면 재해 당사자는 휴업급여 및 산재 장애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휴업급여 산정에 필요한 임금대장 등 관련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산재보상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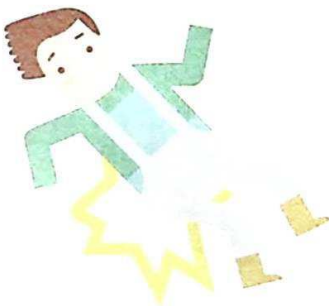
구분	지급기준
요양급여	· 요양급여는 병원비를 말하며, 공단이 설치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 비용을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요양을 먼저 하고 진료를 부담한 경우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 산재보험요양급여 선정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비급여 항목 등 일부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휴업급여	·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입원/통원)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장해급여	·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료되었으나,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애가 남아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될 경우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
간병급여	· 치료가 끝난 후에도 간병인이 필요하여 간병이 실제 행하여지면 그 장해정도에 따라 간병비용을 지급

※ 산재보상관련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공무원이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3

도급계약 조사원 (연간·특별조사 조사원)

- ④ 산업재해 :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발생한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
 - ※ 개인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 계약 또는 약관에 따라 보장범위 상이
- ④ 보험 처리기관 : 조사원이 가입한 일반 보험사 또는 산재보험 처리기관 (근로복지공단)
- ④ 세부 처리절차
 - ① 개인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사가 제공하는 보험금 지급 청구에 따라 실시
 - (1단계) 입원이나 통원치료 후 치료비 지급내역 확보
 - (2단계) 보험사가 제공하는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치료비 영수증과 필요에 따라 특별검사(MRI, CT, 의사소견서 등) 진료 확인서를 같이 첨부하여 보험사로 통보
 - ② 산재 보상 처리의 경우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산재보상 세부 처리 절차 (16쪽) 준용





4

맞춤형복지 단체보험 가입자 (공무원 및 공무원직)

- ③ 보험금 청구 범위 : 매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
- ③ 보험 처리기관 : 중앙행정기관 통합 공무원단체보험 계약 체결 보험사
- ③ 세부 처리절차
 - ◆ (1단계) 입원이나 통원치료 후 치료비 지급내역 확보
 - ◆ (2단계) 보험사가 제공하는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치료비 영수증과 필요에 따라 특별검사(MRI, CT, 의사소견서 등) 진료 확인서를 같이 첨부하여 보험사로 통보
 - ※ • 재해보상금여, 산재보험 및 맞춤형복지 단체보험은 중복 적용되지 않음
 -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공상 처리 시(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 보상 받는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음
 - 단, 자동차 보험이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 부담한 입원 의료비는 80% 또는 90% 해당액을 하나의 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체보험 관련 문서 및 UBIS 기사판(운영지원 안내) 참조



VIII

기타 안전관련 정보

1

전화 신고

➔ 긴급신고 전화번호 통합서비스(행정안전부)

긴급		비긴급
<p>112 (범죄)</p> <p>119 (재난)</p>	122(해양사고), 1588-3650(재난)	<p>110 (민원)</p>
	1301(범죄,검찰), 182(미아신고,경찰상담)	
	1399(불량식품), 121(상수도), 123(전기), 1544-4500(가스), 1588-7500(전기안전)	
	128(환경오염), 117(학교폭력), 118(사이버테러)	
	125(민수,관세), 1303(군위기,범죄신고)	
	1366(여성폭력), 1388(청소년상담)	
	1577-1389(노인학대)	
	1577-0199(자산,정신건강)	

※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긴급신고 체계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쉽게 신고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신고(112, 119)와 민원상담(110)으로 통합



㉠ 개별 긴급신고 전화번호

㉠ 긴급 신고

신고내용	관련기관	전화번호
간첩신고	국가정보원	111
간첩신고	경찰청	113
범죄신고	경찰청	112
사이버테러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화재·구조·구급·재난신고	소방청	119
밀수 사범 신고	관세청	125
마약·범죄종합신고	검찰청	1301
군사기밀·간첩·방산스파이신고	국군기무사령부	1337
감염병 신고	질병관리청	1339

㉠ 생활 정보

신고내용	관련기관	전화번호
세계시각 안내	KT	116
일기예보 안내	한국기상산업기술원	131
우체국민원 안내	우정사업본부	1588-1300
관광정보 안내	한국관광공사	1330
교통정보 안내	국토교통부	1333
107 손말이음센터(청각장애인 화상.문 자 연결)	한국정보화진흥원	107
도로명주소 도움센터	행정안전부	1588-0061

● 민원 신고/상담

신고내용	관련기관	전화번호
정부 통합 민원서비스 시/도 민원신고 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각 지자체 콜센터	110 (지역번호)120
수도 고장 신고	상수도 사업본부	121
전기 고장 신고	한국전력공사	123
전기 안전 상담	한국전기안전공사	1588-7500
가스 사고 신고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
환경오염신고	환경부	128
보건복지콜센터	보건복지부	129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인권 침해 상담	국가인권위원회	1331
금융 민원 상담	금융감독원	1332
방송통신 민원 상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35
개인정보 침해 상담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노동법령·제도상담	고용노동부	1350
국민연금 상담	국민연금공단	1355
방송통신심의 민원	방송통신위원회	1377
주민등록 진위확인	행정안전부	1382
부패신고 및 공익침해 신고·상담	국민권익위원회	1398
부정·불량식품 신고	식품의약품안전처	1399
경찰 민원 상담, 실종아동찾기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182
가족상담 (한부모 상담, 양육비 이행 지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여성가족부 산하)	1644-6621
범죄피해자 지원콜	대검찰청	1577-2584
여성긴급 전화(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상담 및 보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1366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신고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 센터	117
청소년 상담(가출, 학업중단, 인터넷 중독, 고민 상담)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	1388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진단, 상담	스마트쉼센터	1599-0075
도박 예방, 치유, 재활 안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1336

2

앱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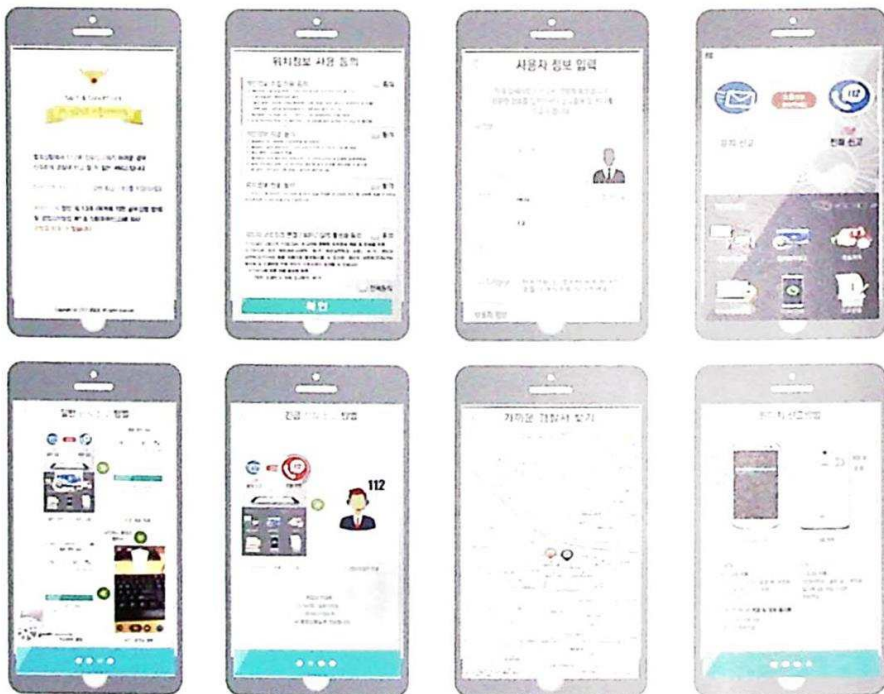
① 112긴급신고 앱(경찰청)

- ② 112긴급신고 앱은 납치·성범죄와 같은 위급한 범죄상황에서 112로 전화하여 신고하기 어려울 경우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 할 수 있는 서비스
- ※ 112는 긴급범죄신고입니다. 민원상담은 110(통합)또는 182(경찰청)

[112긴급신고 주요 기능]

① 긴급신고

- 112긴급신고 앱으로 신고하면 경찰은 여러분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판단하고 즉시 출동
- 사용자 정보에는 정확한 내용을 입력, 위치서비스(GPS 등)를 켜 두면 보다 정확하게 신고자의 위치 파악 가능
- ※ 112긴급신고 앱 작동여부 확인은 'TEST신고' 기능을 활용
- ※ 허위 신고는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원터치 SOS 서비스 ※ 사전에 경찰서 방문 신청 필요

㉠ 원터치 SOS서비스는 범죄에 취약한 미성년자, 여성이 위기상황에서 휴대전화로 단축키를 눌러 신청하면 경찰이 신고자의 위치를 확인하여 즉시 출동하는 서비스

- 대상자 : 모든 미성년자 및 여성(일반 휴대폰 또는 스마트폰 필요)

- 접수처 :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 이용방법 : 경찰관서 방문 → 가입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 및 처리동의서 작성 → 휴대폰에 112를 단축번호로 지정 → (상황 발생 시)단축번호 누르기 → 경찰에서 신고자의 신원 및 위치정보 확인 → 즉시 출동





➔ 119신고(소방청)

- Ⓢ 신고자가 최소한의 동작으로 119 신고를 도와주는 앱으로 신고 메시지는 MMS 또는 SMS 를 통해 해당 지역 소방 상황실로 전송
- Ⓢ 119신고앱 사용 시 GPS 상태를 확인하여 자동으로 GPS 활성화 설정 페이지로 전환되며 신고자는 GPS 설정 후 위치 정보 활용 동의와 함께 바로 신고 전송 메시지를 송신
- Ⓢ 신고 전송 메시지에는 획득한 위치정보를 신고정보에 포함하여 신고자의 위치로 보다 빠르게 출동

[119신고 주요 기능]

- ① 최소한의 조작으로 빠른 신고 가능
- ② 긴급대피요령 및 응급처치요령 제공
 - ※ GPS 기반의 위치정보 획득기능은 실내에서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 실수 및 오작동으로 신고 정보가 해당 소방본부로 전송되었을 시, 확인 전화를 꼭 받으셔서 정확한 상황 설명 부탁





①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 ② 안전Dream은 해마다 증가하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피해신고접수와 신속한 구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경찰청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

[안전Dream 주요 기능]



① 찾아주세요 182

- 실종(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질환자)이 발생, 보호하고 있을 경우 신고
- 실종우려가 있는 자녀(부모)의 신상정보를 미리 기기에 저장, 실종발생 시 빠른 신고
- 길을 잃은 아동 등(18세 미만, 지적장애인, 치매질환자)을 발견 하였을 경우 제보

② 도와주세요 117

-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관련신고 가능
- 유해업소 신고 시 사진을 바로 찍어서 제보

- 신고전화 : 실종아동찾기센터(☎182)와 학교·여성폭력 긴급지원센터(☎117)로 직접 전화신고 및 상담

- 내 주변의 생활안전시설 위치 검색 가능

※ 실종 발생 시 빠른 초기대응 무엇보다도 중요

* 신고 및 제보 시 SNS 공유 등의 기능으로 빠른 전파 가능

※ 학교·여성폭력, 성매매 피해 등 남에게 말하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들 신고 가능



➔ 안전신문고(구 생활불편신고)(행정안전부)

❶ 시설, 교통, 학교, 생활, 해양 등 모든 분야의 안전 위험요인을 대상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된 내용은 국민신문고와 연계하여 처리됨. 2020년 11월 27일 부터 생활불편신고를 안전신문고로 통합 운영

※ 긴급한 화재, 구조, 구급은 119로, 치안은 112로 신고

[안전신문고 주요 기능]

❶ 안전, 생활불편, 불법 주정차, 코로나19 신고

- 사진/동영상, 신고발생지역, 신고내용 입력만으로 위험요인을 간편하게 신고

- 신고발생지역은 전자지도에서 선택하면 주소가 자동으로 변환되어 입력

- 사진 동영상은 최대 4개(사진 50MB , 동영상 120MB)까지 첨부 가능

※ 비회원인 경우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고결과를 앱에서 조회 가능





➔ 성범죄자 알림e(여성가족부)

- 기존 PC용 웹사이트의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를 스마트폰에서도 이용하도록 만든 어플리케이션
- 현재 성범죄자의 실제거주지(실시간 위치 아님)를 알려줌
 - 메시지나 음성 알림 기능도 제공
 - ※ 공개되는 성범죄자 정보는 법원의 공개명령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므로, 여성가족부에서 임의로 공개대상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님

[성범죄자 알림e 주요 기능]

- ① 성범죄자 지도검색, 조건검색
 - 지도상에서 원하는 지역 또는 조건(이름, 시도명, 도로명)검색어로 원하는 조건에 적합한 성범죄자의 정보를 열람
- ② 성폭력예방 및 안전지원 서비스
 - 성폭력예방교육, 성교육, 아동 성폭력 예방 메뉴얼 등 교육자료 제공과 국민 SOS 안심서비스, 심야 안전귀가지원 서비스 등의 안전정보 안내
 - ※ 이 정보를 이용하여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개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시티즌코난(경찰청&인피니그루)

▶ 시티즌코난(=피싱아이즈 폴리스)은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와 (주)인피니그루에서 개발 및 공동 운영

▶ 시티즌코난은 일선의 경찰관들의 요청으로 개발된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악성앱을 탐지하기 위한 악성앱 순간 탐지기이며, 구 피싱아이즈 폴리스와 같은 앱

[시티즌코난 주요 기능]

① 보이스피싱, 피싱차단, 스미싱, 금융사기예방

- 각종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전화 가로채기앱, 금융기관 사칭앱, 경찰/검찰 등의 공공기관 사칭앱, 의료 사칭앱, 택배/쇼핑 사칭앱, 뽐캠 악성앱 등을 실시간으로 탐지

② 설치된 악성앱 외 미설치된 악성파일(.apk / .zip) 탐지 및 삭제 기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2. 1. 27.예정) 안내

* 출처 (중앙행정기관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자료(고용노동부, '21.11. 24.))

입법 취지

-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법인 또는 기관 단위에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입법('22. 1. 27일 시행)

적용대상

- 기업 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며, 법에 따른 의무 이행 주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임

재해유형 및 법 위반 효과

-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산업재해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 교통 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2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한 부상자 2명 발생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3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중대산업재해의 범위

- 직무 사고에 의한 사망 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포함
 - 사망은 '종사자의 사망'시점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봄
 - * 직무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뇌심혈관질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등 해당
- 공무원 등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공무직, 기간제) 뿐만 아니라, 도급, 용역, 위탁 근로자 등 종사자를 모두 포함

경찰서 업무 협조 공문(예시)

■ 관할 경찰서 또는 지구대 협조 공문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통계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수립 및 평가와 분석·연구의 기반이 되는 다양한 분야의 국가 기본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하지만, 최근의 사생활보호 의식의 확산, 1인·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조사 환경은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더구나 원룸, 오피스텔, 고시원 및 공장밀집 지역, 불법체류 외국인 및 노숙자 거주지역 등에서 조사직원의 신변을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4. 이에, 귀 경찰서 관할인 (○○지방통계청 ○○과 또는 통계청 ○○사무소)의 통계청 조사직원이 위험한 조사대상처 방문 시 동행 협조를 요청 드리오니, 소속 경찰관의 업무지원을 통하여 통계조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첨부] 통계청 통계조사 소개

- * 지방청(사무소)에서는 관할 경찰서(지구대)와 부서장간 간담회 등을 통해 업무 협조에 관해 사전에 협의한 후 공문 발송 요망



안전교육 시 본 매뉴얼을 교재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통계청
Statistics Korea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kostat.go.kr